

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) 공고

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『23년 고위험개선 사업』을 추진함으로써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월 17일

I 사업목적

- 끼임,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·기술지원 결과, 시급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

II 사업개요

- 고위험개선(산업단지 포함) 재원: 482.4억원(전년 동)
- 접수기간: '23. 1. 17.(화) 09:00부터 ~ 재원 소진 시까지
- 접수처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(알림마당>지역별 문의처 참고)
- 신청방법: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를 통해 보조금 신청서 제출 (단,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접 제출 방식, 우편접수 등 가능*)
- *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대리 신청 확인 시 서류일체 반려 조치됨

📎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

- 클린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→ 알림마당 → 서식모음 및 자료실 (문의: ☎ 1544-3088)

* 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 변경(표준양식 준용)

- 운영방안: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·접수
- 지원품목: 붙임1 참조

* 사회적 현안, 산업재해발생현황, 고용노동부고시·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

III 사업절차 및 방법

[사업추진절차]



* 공단 숲 기술지도 연계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□ 신청대상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
-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(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(40001~9)인 경우 제외)
-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「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및 건축물 등」에 따른 2호~24호까지의 설비* 보유 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(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.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업종코드가 건설현장(40001~9)인 경우 제외)

*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, 굴착기, 로더, 타워크레인, 지게차 등

-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*

*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- ④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·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(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

- 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·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(50인 미만 건설업본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

□ 지원제외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*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

* 지원제외대상: ❶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❷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건설업체, 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❹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, ❺ 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, ❻ 당해 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및 안전투자 혁신사업 결정 사업장 등

□ 지원금액: 사업장 당 3,000만원 까지(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(Quick-Pass 포함))

*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: ❶ 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 범위), ❷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, ❹ 고위험업종(6개업종)*

* ①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(20910), ②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(21816), ③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(21809), ④ 기타각종제조업(22910), ⑤ 석재및석공품제조업(21804), ⑥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(21822)

(단, Quick-pass의 경우에는 사업장 당 350만원 까지, 당해 연도 1회에 한함)

*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

□ 지원한도: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 지원

□ 지원조건

- (고위험개선) 사망사고 예방품목 구입·설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
- (신속지원) 전체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즉시개선이 필요하다고 공단 컨설팅·기술지도 수행직원이 지적한 설비에 대해 개선

□ 지원품목

- (고위험개선) 붙임1 참조
- (신속지원)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 전체

□ 제출서류

-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> 공지사항 > 알림마당 > 서식모음자료실 > 「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오프라인 양식 게시 알림」

IV 세부추진절차

① (기존) 고위험개선



- ① (참여신청) 홈페이지(<https://clean.kosha.or.kr>)를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(사업주)
- ② (투자계획 확인) 사업장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* 등을 통해 투자계획 확인(공단)
 - * 서면 확인 시 투자계획 적정성 확인을 위한 사진자료(사업장 전경, 개선 전 상태 (작업), 설비 설치장소 사진 등) 확인 필요
- ③ (보조금 결정) 보조금 결정대상자(필요시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적용) 및 보조금액 결정(공단)
- ④ (시설개선)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*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(사업주)
 - * 단품 지원의 경우 가급적 보조금 지급결정 후 2개월 이내 개선 권고
- ⑤ (투자완료 확인) 현장방문을 통해 투자내용에 대한 이행과 적정성 여부 확인(공단)
- ⑥ 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1~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

② 신속지원



- 현장점검 중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에서 소액 재정지원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,
- ① (확인서 발급)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(공단)
 - ② (시설개선 및 개선비용 신청)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확인·비용지원 요청(사업주)
 - ③ (개선확인 및 보조금 지급) 개선결과 확인(현장점검 병행) 후 보조금 지급(공단)

III '23년 사업 변경사항

□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

○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수립 및 적용(일선기관 필요시 적용)

- 자율활동 우수항목 점수부여를 위해 **인증(정)서를 제출 필요**

* 일선기관별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-공단소개-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 게시판 참조

○ '23년 고위험개선 사업 지원대상 확대

-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자체적인 재해 예방조치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확대

• (추가) 소기업기본법 시행령[별표3]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*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○ 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설정 기준 일원화

-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4년 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”으로 적용

* 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'23.5.30.(지급보증기간 산정: 4년)
보험기간: '23.5.15. ~ '27.5.14.

○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* 운영

-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업체의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고자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연간 시행

•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,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*을 제출

* **인감증명서**와 위임장에 날인된 **인감**이 일치하여야 함

○ 원가계산서 제출 절차 개선

- 신청단계가 아닌 투자완료확인(요청)단계에서 원가계산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
- 신청 시 견적서(도면, 세부내역서 포함)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결정하고, 투자완료확인(요청)시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*를 제출받아 최종 보조금** 확정(단, 결정금액 초과 불가)
- * 원가계산용역기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(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)를 충족하는 업체: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)에서 작성한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
- ** 견적서, 실거래 입증서류(전자세금계산서 등),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중 **최저금액과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공단 판단금액**으로, 해당 금액의 70%를 **최종 지원금액**(보조확정금액)으로 함
- 1천만원 미만 공사(공사품)인 경우도 사업장 희망 시 견적서 및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원 가능

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			
공사금액(소요금액)	4천만원 이하	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
원가계산 최대인정금액 (공단)	40만원	50만원	60만원

※ 원가계산전문기관을 통한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(부가세 제외) 중 일부를 소요금액으로 인정(단, 원가계산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를 제출하는 경우만 지급)

※ 예시)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 견적금액 2,000만원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내 공사비용 2,000만원, 실 소요금액 1,900만원,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 45만원인 경우(부가세 제외):
 (총 소요금액) 1,900만원(공사금액) + 40만원(원가계산 최대인정금액) = 1,940만원
 (보조확정금액) 1,940만원 x 70%(보조비율) = 1,358만원

○ '23년 고소작업대 지급기준 등 변동사항 적용

- '23년 보조금 지급기준 변동사항* 적용
- * 전략품목(2종) 지원 확대, 신규품목(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설비, 식품가공용 기계) 추가,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(취출로봇) 지원형태 다양화, 고소작업대 지급기준 변경

□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지원

○ 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 설정 기준 일원화

-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6년 (사후관리기간(5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”으로 적용

- (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'23.5.30.(지급보증기간 산정: 6년)
보험기간: '23.5.15. ~ '29.5.14.

○ 교육시설 이용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검토

- 교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업신청 시 구체적인 교육시설 이용 계획서(운영계획서內, 월별 또는 분기별)를 제출 필요